

글로벌 식품 비관세장벽 뉴스레터

WEEKLY NEWSLETTER



글로벌 주간 뉴스브리핑

필리핀, 가공식품의 영양정보 표시 기준 개정안 공개 (2023년 9월 22일 시행)



TBT

이슈 바로가기 ▶

- 2023년 1월 필리핀 식품의약품(FDA)은 포장된 가공식품의 영양정보 표시 기준을 「2002년 권장 에너지 및 영양소 섭취량(2022 RENI)」에서 「2015년 필리핀 식이 기준 섭취량(PDRI)」로 대체하는 개정안을 공개하고, 2023년 9월 7일 FDA 회람 번호(Circulation No) 2023-009를 통해 이를 채택함
- 주요 내용
 - 1) 지침 주요 내용
 - ① 포장된 가공식품의 영양정보는 필리핀 과학기술부의 식품영양연구소(FNRI)에서 규정하는 권장 에너지/영양소 섭취 수준에 따라 「%권장 에너지/영양소 섭취량(%REI/RNI)*」을 표시 기준으로 사용해야 함
(*) 인구중 건강한 사람의 건강 유지에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에너지 또는 영양소 섭취 수준
 - ② 가공식품의 영양성분표/영양정보에는 “PDRI 2015 기준” 문구가 표시되어야 함
 - ③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의 에너지 및 영양소 계산은 특정 연령 및 성별 그룹에 대해 명시하지 않는 한 19~29세 남성,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6~9세 어린이의 칼로리 요구량을 기준으로 함. 제품의 대상 연령 및 성별 그룹이 있는 경우, 연령 정보를 표 아래에 명시하여야 함
 - ④ 일반인을 제외하고 2개 이상의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의 경우, 에너지 및 영양소 기준치는 높은 에너지 및 영양소를 필요로 하는 연령대를 사용함
 - ⑤ 철분 수치는 남성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여성용인 경우에만 여성의 철분 수치를 기준으로 함
 - ⑥ 식이섬유 함량 계산 시 성인의 경우 권장량 20~25g, 어린이의 경우 권장량의 상한선인 25g을 기준으로 함
 - ⑦ 나트륨에 대한 영양소 섭취량(RNI)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나트륨의 한도는 WHO 성인 및 어린이 나트륨 섭취량 가이드(2012)**를 기준으로 함
(**) 성인 2000mg/일, 2~15세 어린이는 성인 복용량을 하향 조정할 것을 권장
 - 2) 시행일: **2023년 9월 22일 시행**(공고일로부터 15일 이후)

출처: REPUBLIC OF THE PHILIPPINES, FDA Circular No.2023-009

인도네시아, 가공식품 사용 금지 원료 및 식품 첨가물 금지 성분 목록 개정(2023년 8월 15일 발효)

- 2023년 9월, 인도네시아 식품의약품안전청(BPOM)은 가공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 및 식품 첨가물 성분 목록 규정 「2018 NO.7」을 업데이트한 「2023 No.22」를 발표함
- 주요 내용(목록의 주요 업데이트 사항)
 - 1) 천연 성분 목록: 165개 성분 중 9개* 성분 삭제(총 156개 성분 금지)
(*) Cinnamomun iners Reinw. Ex Blume, Haematococcus pluvialis Flotow, Lonicera japonica Thunb, Melaleuca alternifolia (Meiden & Betche) Chell, Melissa officinalis L., Morus spp, Mucuna prurins (L.) DC., Tilia x europaea L., Verbena officinalis L.
 - 2) 화학 합성 성분 목록: 35개 성분 중 30개 성분 삭제(총 5개 성분 금지)
 - 3) 첨가물 목록: 45개 성분 신규 등록(총 45개 성분 금지)
 - 4) 시행일: **2023년 8월 15일 발효**(공고일부서 시행)



SPS

이슈 바로가기 ▶

출처: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Indonesia.), BPOM Regulation No. 22 of 2023 on Raw Materials Prohibited in Processed Food and Ingredients Prohibited from Use as Food Additives, 2023.08.15

러시아, 식물성 식용유에 디지털 라벨링 표시 제도 시범 적용 예정 (2023년 12월 1일부터 적용)



TBT

이슈 바로가기 ▶

- 러시아 산업통상부는 식물성 식용유 제품을 대상으로,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체스니 즈낙*(디지털 라벨링) 제도를 시범 적용할 것을 제안함
(*) 데이터 매트릭스 코드(디지털 라벨)를 제품에 부착하여 제품의 생산, 판매, 유통 과정의 정보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체스니 즈낙 제도는 식품의 경우 유제품과 포장된 생수 제품(2022년 12월부터 적용), 맥주와 저알코올 음료(2023년 4월부터 적용), 비알코올성 음료(2023년 9월부터 적용)에 시행되고 있으며, 2023년 10월 1일부터 건강보조제도에 적용되는 등 점차 확대 적용되고 있음
- 주요 내용
 - 1) 적용 대상: HS CODE 1508~1517 및 HS CODE 1804(코코아 버터 및 유지)에 해당하는 식물성 식용유 제품
 - 2) 적용 기간: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시범 적용

출처: 러시아 규정 포털(regulation.gov.ru), О проведении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эксперимента по маркировке средствами идентификации пищевых растительных масел, упакованных в потребительскую упаковку, 2023.09.22

글로벌 식품 비관세장벽 뉴스레터

WEEKLY NEWSLETTER



글로벌 주간 뉴스브리핑

일본, 수입 가공식품에 대한 일본어 식품 표시 가이드 개정판 공개



TBT

이슈 바로가기 ▶

- 2023년 9월 일본 도쿄도는 '가공식품의 일본어 식품 라벨을 처음 제작하는 사람을 위한 지침'의 개정판을 공개함
- 주요 내용(가공식품 표시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

구분	주의 사항
원재료명, 첨가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재료명과 첨가물을 구분하여 표시해야 함 원재료명과 첨가물은 사용된 무게 순으로 정렬함 원재료는 널리 알려진 이름으로 표시하며, 첨가물은 물질명으로 표시함
알레르겐 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재료에 알레르겐 성분이 있는 경우는 원재료명 바로 뒤에 괄호를 하고 '원재료명(알레르겐 성분 포함)'으로 표시함 (표시 예: 요구르트(우유 성분 포함), 난황(계란 포함), 간장(대두, 밀 포함)) 첨가물이 알레르겐 성분에서 유래하는 경우는 물질명 바로 뒤에 괄호를 하고 '물질명(알레르겐 성분)'로 표시함 알레르겐 성분 의무표시 8품목: 새우, 게, 호두, 밀, 메밀, 계란, 우유, 땅콩 알레르겐 성분 권장표시 20품목: 아몬드, 전복, 오징어, 연어알, 오렌지, 캐슈넛, 키위, 쇠고기, 참깨, 연어, 고등어, 대두, 닭고기, 바나나, 돼지고기, 송이버섯, 복숭아, 참마, 사과, 젤라틴
기한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기 포장이 닫힌 상태에서 상하기 쉬운 식품에는 소비기한(지나면 먹지 않는 것이 좋은 기한)을 표시함 그 외 식품에는 상미기한(맛있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표시함 년-월-일 순으로 작성하며, 보존 방법을 함께 기재함(표시 예: 2023.07.21 또는 令和5年7月21日)
영양성분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어로 영양성분 표시가 있는 경우에도 식품표시기준에 맞게 일본어로 라벨을 붙여야 함 의무표시대상 5개 영양성분: 열량,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나트륨(식염상당량(食塩相当量))* 순으로 표시해야 함 의무 표시대상 외 영양성분(칼슘, 비타민C 등)은 별도 표기 규칙을 따라야 함 '무설탕', '비타민C 가득' 등 특정 영양성분을 강조 할 때는 영양성분 강조 표시 기준을 따라야 함

(* 나트륨 표시 방법: 나트륨 양을 식염 상당량으로 변환하여 표시해야 함(식염상당량(g) = 나트륨(mg) x 2.54 ÷ 1,000)

출처: 東京都保健医療局健康安全部食品監視課, 日本語で初めて表示をする人向け加工食品の食品表示, 2023.09.26

캐나다, 식품 수출 시 주의해야 하는 식품 알레르기 표시 기준 종합 공고

- 2020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캐나다에서 리콜된 식품 문제 사례 중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식품 라벨에 표기하지 않아 리콜된 한국 식품의 문제 사례가 매년 확인되고 있으므로, 본 기사에서는 한국 수출 기업이 주의해야 하는 캐나다의 식품 알레르기 표시 기준을 정리함
 - 주요 내용(수출 시 주의해야 하는 알레르기 필수 표시 기준)
- 1) 해당 물질을 식품 라벨에 표시할 경우 지정된 물질명(prescribed source name)을 사용해야 함 (* 아황산염의 지정 명칭은 "이슈 바로가기" 참조)



TBT

이슈 바로가기 ▶

주요 알레르겐	지정 명칭	주요 알레르겐	지정 명칭
견과류 (복수 명사 표시 가능)	Almond/Brazil nut/Cashew/ Hazelnut/ Macadamia nut/Pecan/ Pine nut/Pistachio/Walnut	머스타드	Mustard, mustard flour, ground mustard, mustard seed
땅콩	Peanut, peanuts	달걀	Egg, eggs
참깨	Sesame	우유	Milk
대두	Soy, soya, soybean or soybeans	밀과 라이밀	Wheat or triticale
글루텐 물질	지정 명칭	글루텐 물질	지정 명칭
보리	Barley	라이밀	Triticale
귀리	Oats	밀	Wheat
호밀	Rye		

- 2) 주요 식품 유발 물질과 글루텐 물질, 아황산염(10ppm 이상 함유 시)은 "성분 목록(ingredients list)" 또는 "Contains" 문구에 표시해야 함
- 성분 목록에 표기하는 경우:
 - 물질이 식품 재료에 직접 사용되거나 재료의 구성 성분일 경우, 해당 물질과 연계된 식품 재료 또는 구성 성분의 바로 뒤에 지정 명칭을 사용하여 괄호로 표시해야 함
 - "Contains" 문구에 표기하는 경우:
 - 물질이 '성분 목록'에 없는 식품 재료에 포함되거나 가공 과정에서 사용되는 첨가물의 구성성분에 사용된 경우, "Contains" 문구에 표시해야 함

출처: 캐나다 보건부, List of ingredients and allergens on food labels